국가재정법/국가건전재정법 제정의 평가와 정책과제

2005. 4. 8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목 차

I. 문제의 제기	1
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3
1. 국가재정법 2. 국가건전재정법	
Ⅲ. 주요쟁점의 검토와 대안	12
1. 통합재정과 국가채무의 범위	12
2. 추경편성의 제한	15
3. 세계잉여금의 처리	16
4. 국채의 발행규모	17
5. 특별회계의 요건	18
6. 기금의 요건	19
7.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20
8. 회계,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21
9.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22
10.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재정계획	23
11.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24
12. 예산안의 편성	
13. 예산의 법률적 효력	26
14. 예비비	27
15. 세입세출예산 구분에 있어 국회 동의	
16. 총액계상 예산의 범위	28

17. 예비타당성조사 29
18. 재정정보의 공표
19. 예산전용의 범위
20. 기본급에 대한 이・전용 등의 금지
21. 총사업비 관리
2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사용
23. 결산의 국회 제출
Ⅳ. 요약 및 결론
첨부자료
1. 국가재정법안
2. 국가건전재정법안 73

I. 문제의 제기

□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기본적 틀은 19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과 1991년 에 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기초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재정운용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이제 더 이상 현재의 낡은 틀로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어렵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었음.
□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난 수년간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국가재정운용의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여 왔음.
□ 이제 그러한 결실로서 정부는 지난 2004년 10월에 「국가재정법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은 이와 별도로 2004년 12월에 「국가건전재정법안」을 제출하였음.
○ 이 두 가지 법안은 동일하게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세부 내역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재 국회는 4월에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가재정운용의 기본 틀을 만드는 일은 재정학계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음. 국가재정의 기본 법 체계의 제정을 앞둔 시점에서 재정학계가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그간의 학계의 연구 성과를 집적해서 올바른 법 제정의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이는 특정 정파를 초월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정책담 당자와 재정학자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임.

□ 이에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는 '국가재정법/국가건전재정법 제정의 평가

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게 되었으며, 이 자료는 올바른 국가재정 기본 법 체계의 설정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 음.

- 이 자료는 양 법안에 대한 발제자 개인의 검토의견과 대안을 담고 있 으며,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 제Ⅱ장에서는 국가재정법안과 국가건전재정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원안대로 정리했으며, 발제자료 뒤에 양 법안의 전문자료를 첨부하였음.
- □ 제Ⅲ장에서 양법안의 쟁점사항별로 비교 검토한 의견과 대안을 정리하였음. 여기에는
 - 양법안의 공통사항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 양법안이 대립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과 대안
 - 한 법안만이 갖고 있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과 대안 등이 망라됨.
- □ 여기서의 의견과 대안 제시는 현 시점이 그간의 오랜 논의를 거쳐 국가 재정에 관한 기본 법 체계를 설정하는 마지막 단계라는 점을 감안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보다는 구체적 법 조항 내용의 수정과 보완, 대립되는 조항 중 선택 등 매우 실무적인 수준에서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 이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조정을 통해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기본 틀이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짜여질 수 있기를 기대함.

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 국가재정법

<제안이유>

재정운용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 성과 관리 등 재정개혁과제들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여 재정의 효율성·건전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안 제6조)

- (1)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본틀로 활용함으로써 단년도 위주의 재정운용방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정부는 매년 중·장기 재정전망, 재정운용목표,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등을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 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동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3) 내실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하여 중·장기적 재정운용이 가능하여짐으로써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안 제7조)

- (1)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 각 부처의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임.
- (2)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성과

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을 요구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결과를 재정운용에 환류함으로써 집 행결과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안 제8조)

- (1) 국민들이 국가의 중요한 재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2)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중요한 재정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표에 필요한 자료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 록 함.
- (3) 재정정보의 공표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재정운용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됨.

라.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안 제13조)

- (1)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통합운용을 위하여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특별 회계·기금으로의 일방적인 재정지원제도를 회계·기금 상호간에 여 유재원의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 (2)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그 회계 또는 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호 전입·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되 연금성 및 보험성 기금은 전출입 대상에서 제외함.
- (3) 회계·기금간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통합재정의 관점에서 재정운용 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재정의 경기자동안정화 기능 강화(안 제17조제2항)

- (1) 과거 단년도 중심으로 다음 연도 세출규모와 세입규모를 연동시켜 재정을 운영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 균형기조하에서 재정의 경기 자동안정화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2) 정부가 추계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국채의 발행 또는 차입의 규모를 세입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전년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1을 합한 금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을 수 있도록 함.
- (3)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가 당초 세입예산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에도 중·장기적 시계하에서 결정된 재정지출규모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예산 총액배분 · 자율편성제도의 도입(안 제25조 및 제26조)

- (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 (2)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3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0일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3)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한 분권적·자율적 예산편성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재정운용과정에서의 각 부처의 전문성·창의성 이 크게 발휘될 것으로 기대됨.

사.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안 제50조 내지 제53조)

- (1) 국회의 결산심사를 앞당겨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결산의 국회제출 기한을 당초 다음 연도 9월초까지에서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2개월여 앞당김.
- (3) 조기 결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심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국회의 심층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안의 경우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안 제73조)

- (1)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령을 제·개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 전 점검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2)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재정수지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함.
- (3) 법안 입안단계에서부터 재원조달측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짐으로써 재정수지를 건전하게 관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국세감면에 대한 통제강화(안 제74조제2항 및 제3항)

- (1) 실질적으로 재정지출의 효과가 있는 국세감면의 신설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편, 국회의 관리·감독도 강화하려는 것임.
-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국 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 고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하여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국세감면보고 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3) 과다한 국세감면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안 제75조)

- (1) 종전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2)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요건을 4가지 불가피한 사유로 구체 화함으로써 과다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재 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의무화(안 제76조제1항 및 제2항)

- (1)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제한하여 국가의 채무를 줄이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2)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 정교부금을 정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채무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3) 세계잉여금으로 국가채무를 우선 상환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이 제 고될 것으로 기대됨.

타.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제출(안 제77조)

(1) 앞으로 공적연금, 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하여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2)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증 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3) 국가채무에 대한 사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채무를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파.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도입(안 제86조)

- (1) 재정지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행정부 내부 통제장치 외에 외부통제장치도 제도화하려는 것임.
- (2)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책임있는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통 지하도록 함.
- (3) 재정운용과정에서의 국민감시를 활성화함으로써 예산낭비사례 등을 줄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국가건전재정법

<제안이유>

지난 50여년간 국민의 재정주권은 형식에 불과했음. 국회의 예산심의·결산심사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고,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통제는 불가능했음.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국왕의 재정에 대한 전횡을 막기 위한 투쟁에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고 함. 민주화의 완성을 위해서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국민의 재정주권을 되찾아야 함. 이를 위해 예산총칙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고 예산지출법을 도입하고, 예산심의·결산심사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기결산체제를 구축하고, 납세자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와 공적연금·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과거에 비해 세입증가율은 둔화되는 반면 복지지출을 비롯해 세출소요는 계속 증가하여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국가채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재정기조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임. 그런데도 정부는 연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집착하고 있음. 국가부채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잡히지 않고 있음. 이래서는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재정이 멍들 수밖에 없음. 국민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국가부채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세계잉여금도 빚 갚는데 먼저 쓰도록 하고, 추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추경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정부부문의 마구잡이식 확대와 공공부문의 방만한 운영을 막는 장치도 마련하려는 것임.

지난 5년여동안 국회는 지속적으로 재정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해왔음. 이 과정에서 우리의 후진적인 재정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었음. 이러한 논의의 결실을 충실히 담아내려는 것임. 통합 재정 범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고, 중기재정계획, 성과주의예산, 조세지출예산제도 등을 도입하고, 예비타당성제도, 총사업비관리제도, 총액계 상사업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주요내용>

- 가. 통합재정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준정 부공공기관의 순수한 기업활동 이외의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함(안 제2 조제2호).
- 나. 국가채무의 범위를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채무로 하며, 국가관 리대상채무를 국가채무에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우발채무를 합 산한 것으로 함(안 제2조제15호 및 제16호).
- 다.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총칙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안 제4조제 1항).
- 라. 입법과목별 목적, 용도, 사업내용, 사용에 대한 제약조건, 권한과 책임을 명시한 입법과목별 예산세칙은 법률로서 승인되어야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
- 마. 재정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조제7호 및 제9조).

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안 제10조)

-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연도의 성과계획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전 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4) 감사원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성과검사보고서도 함께 재경부장 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사. 예비비(안 제25조)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2)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음.
- (3)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아.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의한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 · 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때에 함께 제출하 여야 함(안 제2조제8호 및 제31조).
- 자.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과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42조).

차. 총사업비 관리(안 제56조)

-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을 요하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2)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3) 기획예산처장관은 완성에 3년 이상을 요하고,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2차 연도부터 매년 6월말까지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야 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된 때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업을 중단하여야 함.
- 카.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과 성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64조).
- 타.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100분의 30 이상, 국채 등의 원리금 상환 등 채무상환에 100분의 30 이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금액을 제외한 여분이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음(안 제94조).

파. 국민은 국가 등의 국가재정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의 예방, 회복을 위한 소송 ("납세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106조).

Ⅲ. 주요쟁점의 검토와 대안

1. 통합재정과 국가채무의 범위

국가건전재정법안 (제2조)

- "통합재정"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준정부공공기관의 순수한 기업활동 이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 3. "준정부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준정부공공기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금·출연금·보조금 등을 직접 또는 간 접으로 받는 기관 또는 단체
 - 나. 법령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
- 15. "국가채무"라 함은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채무를 말한다.

<검토의견>

- □ 통합재정과 국가채무의 정의를 위에서와 같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음.
 - 우선, 통합재정의 범위 설정은 이후의 많은 조항에 걸쳐(예산원칙, 국가 채무의 범위 등)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이 규정이 다시 106조에 의한 위원회에서 결정되게 하고, 그 구체적 기준과 방법이 없는 것은 법체계상 기본적인 문제를 가짐.
 - 제3항에 의한 준정부공공기관 대상기관 후보는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들 기관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 중에서 대상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이는 결국 국회에 설치되는 준정부공공기관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통합재정과 국가채무의 범위 등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함.
- '준정부공공기관의 순수한 기업활동 이외의 모든 경제적 활동'도 모호 한 개념임.
- 준정부공공기관의 순수한 기업활동을 제외하면서, 국가채무의 범위 설 정에서는 그 기관의 모든 채무를 포함하는 것은 모순임.
- 국가채무의 범위에는 공기업 부문이 거의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의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면서 자산은 제외하고 수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채무만을 파악하여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이용한다는 것 은 잘못된 것임.
- 공기업의 채무도 결국 문제 발생 시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해서 '문제가 될 공기업'의 채무만을 포함시켜야 함.
- 이미 많은 공기업, 출연기관의 경우, 정부의 출자액, 이익금 수입, 출연 금 등의 형태로 예산과 기금에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 따라서 국가건전재정법안상의 통합재정과 국가채무의 정의와 범위 설정 은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 이 조항의 우발채무와 국가관리대상채무의 정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과 제는 국가채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수급구조 개혁이고, 이는 어떠한 정책과제보다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절대적 과제임.

국가재정법안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 다.

-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 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검토의견>

-제가 있음.
부보증채무의 경우에도 공적자금 투입분 중 회수불능분과 같이 결국 '민부담으로 귀결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의 1호 규정에서 국가채무 산정에 제외되는 회계나 기금을 대통령령에

서 정하기보다는 법안 자체에서 논의해서 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안 상의 국가채무 정의에는 지방정부 부문이 제외되어 있는

2. 추경 편성의 제한

국가재정법안 (제75조)	국가건전재정법안 (제93조)
1.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시급히 필요한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경우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지급하여야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확정되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경비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수 없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당해 연도 예산심의당시 국회에서 삭감한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수 없다. 다만,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등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당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검토의견>

국가재정법안에서 3의 요건(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은 포함한다면 보
다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임.
국가건전재정법안 1항의 요건 중 전쟁은 전시예산체제를 고려할 때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국가건전재정법안 2항의 요건(확정 전 집행)은 당연히 요구되는 조건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국가건전재정법안 3항에서 당초 예산심의 시 삭감한 재원을 추경에 편성할 수 없다는 조건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예산 삭감의 경우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 후자의 사업은 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임.

3. 세계잉여금의 처리

국가재정법안 (제76조)

매 회계연도 세입금액에서 세출금액(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과 다른 법률 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 금"이라 한다)은 다음 채무의 상환에 우 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 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 2.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상금
-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의 상환

국가건전재정법안 (제94조)

①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 자금상환기금법에 의한 공적자금상환기 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 ②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2.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 상금의 지급
 - 3.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 자특별회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 한다)의 원리금 상환
 -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의 상환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검토의견>

□ 두 법안은 모두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국가건전재정법안에서는 보다 강한 제약을 가하 고 있음.

- 국가채무 상환에 60%를 우선 사용하고, 교부금을 정산한 후의 재원을 추경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 이러한 제약은 국가채무 수준을 낮추는 매우 강한 수단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취지는 이해되나, 우리의 국가채무 문제가 이러한 수단의 강구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함.
- □ 오히려 이러한 제약은 재정의 신축성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봄. 경기침체나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크게 제약하게 될 것임.
- □ 사전적 제약조건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추경 내역에 대한 엄정한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 확대를 막고 보다 많은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사료됨.

4. 국채의 발행 규모

국가재정법안 (제17조 2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의 발행 또는 차입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정부가 추계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국채의 발행 또는 차입의 규모를 세입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전년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1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검토의견과 대안>

□ 신축적 예산 운용을 위한 단서조항의 의미는 인정되나, 그 한도를 GDP의 1%로 정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한도를 축소 조정(예컨대 0.5%)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는 헌법 제58조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특별회계의 요건

국가재정법안 (제4조 3항), 국가건전재정법안 (제7조 3항)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 특별회계 요건을 이와 같이 정의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지금 까지 특별회계가 난립되어 온 원인이 되어왔음. 이 조항대로 하면 거의 모든 사업을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이 됨.
 -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모든 사업이 특정 사업임.
- □ 특별회계의 요건으로서 조세부담의 이익원칙(Benefit Principle)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이 경우 특별회계 요건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이번 법 제정에서는 3개의 요건 중 세 번째 조항만으로 특별회계의 요건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

6. 기금의 요건

국가재정법안 (제5조 1항), 국가건전재정법안 (제8조 1항)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

- □ 기금의 법적 정의로서, 특정한 자금과 지출의 연계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별도 조항인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의 자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특정한 사업에 연계하여 신축적으로 운 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
- □ 기금을 법적으로도 사업기금과 연금기금(4개 기금)으로 구분해서 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연기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업기금과 연금기금을 구분하지 않는데서 오는 많은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기금 중 금융기금을 별도로 지정

7.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국가재정법안 (제14조 2항), 국가건전재정법안 (제17조 2항)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미리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 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것

법체계 상 복잡하고 문제가 있음. 다음의 대안을 제시함.	
1호에서는 기금의 부담금뿐 아니라, 특별회계와 기금을 망라하여 세 세출의 연계성을 규정해야 함.	입과
2호의 신축적인 추진은 기금의 요건으로 설정	
3호는 역으로 지금까지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수단으로 특별회계, 기설치되어 온 것을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삭제	금이
5호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삭제	

8. 회계,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국가재정법안	국가건전재정법안 (제16조)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 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여	
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제13조 1항)	고 있는 기금(구조적인 요인을 지닌 연 금성 기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당해 기금수입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한 조치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하여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제69조)	

- □ 국가재정법안의 13조 1항 조항은 연금성·보험성 기금을 제외하고 회계 기금간의 여유자금 활용을 명문화하여 칸막이식 운용에 따른 폐해를 줄 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 □ 그러나 이 조항은 동법안의 제69조와 모순되며, 각 기금의 주체는 여유자 금의 통합관리보다는 수익률 제고를 위한 통합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임.
- □ 기본적으로 사업성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기금 투자풀 제도'는 의미가 없으며, 이들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이전에 국가건전재정법안의 제16조와 같은 규정으로 부담금의 감소를 위한 조치가 우선되어야 함.

□ 따라서 국가건전재정법안의 제16조와 국가재정법안의 제13조 1항을 병기하고, 국가재정법의 제69조는 삭제해야 함. 그리고 국가건전재정법안의 16조 조항은 특별회계에 까지 적용이 확대되어야 함.

9.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국가재정법안 (제61조)	국가건전재정법안 (제73조)			
<주요항목지출금액의 자율 변경 범위> - 금융성기금 이외: 3/10 - 금융성기금: 5/10 (경상비는 3/10) - 여유자금 포함 -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	< 주요항목지출금액의 자율 변경 범위> - 금융성기금 이외: 10/100 - 금융성기금: 15/100 (경상비는 5/100) - 여유자금 불포함 -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			

- □ 양 법안에서는 모두 기금의 신축적 운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실제로 현 재정체계에서 기금이 특별회계와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는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에 있어서의 자율성 부여라고 할 수 있음.
- □ 따라서 기금의 자율적 지출 변경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적정 범위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적정 범 위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없이 그 정도를 급격히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최소한 예산에서 이전용으로 변경되는 범위를 초과해야 함.
- □ 향후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번 법 제정에서는 현행 변경범위를 '다소' 축소 조정하는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임.

□ 여유자금의 경우 자산운용이 중요한 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자율성을 부여 하되. 사업성 기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 타당함. □ 기금운용계획을 초과하는 수입을 직접 관련되는 지출에 자율적으로 사용 하게 할 경우, 기금관리주체 입장에서는 수입을 과소계상하려는 동기가 생기게 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초과수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 은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10.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재정계획 <검토의견과 대안> □ 국가재정법안에서는 3년 이상, 국가건전재정법안에서는 5년 이상으로 규 정 --> 중기적 시계의 재정운용계획은 3년 이상이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국가건전재정법안에서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180일전까지로 규정 --> 중기적 계획은 최소한 예산안 제출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예산안 제출 이전까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예산안 제출 90일전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실한 계획의 작성을 초래할 수 있음. □ 중기재정계획의 집행실적을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정백서로 공표. 공 표 후 국회에 보고(국가건전재정법안 제9조 8항) --> 중기재정계획의 집행실적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연동 계획 성격임을 감안할 때 부적절함. 단, 중기계획과 매년 예산과의 연 관성을 분석하려는 노력은 필요함. 현실적으로 중기계획과 무관하게 예 산이 편성되는 것도 문제이고, 한번 작성된 중기계획에 집착해서 무리

한 추진을 하는 것도 문제임.

11.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 □ 양 법안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나, 국가건전재정법안에서 결산과 성과보고 서 제출을 연계한 것은 의미가 있음(제10조 3, 4항). 결산 또한 성과에 대 한 평가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함.
-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결국 성과보고서는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함.
- □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사업별'로 작성되는 것을 명시하고, 이의 공 개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음.

12. 예산안의 편성

국가건전재정법안 (제32조 - 36조)

- 제33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정부는 매 회계연도 4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의 예산편성지침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예산안편성지침 통보)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 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 여 통보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라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한 경우 이를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 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 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36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 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안은 편성하여 제출할 수 없다.

- □ 제33, 34조: 예산편성지침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필요하나,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동의 과정이지연될 경우 예산편성 과정 자체가 표류할 위험성이 있음.
 - 국가건전재정법안 제69조 2항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한 국회 동의 문제도 동일한 문제를 가짐.

- □ 34조 3항: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경 우 국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 □ 35조 1항: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예산심의에 필요할 경우 국회가 부처에 예산요구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임.
- □ 36조: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안 편성과 제출은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사업의 착수시기에 1년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인정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단, 법률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예산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장치가 작동되어야 할 것임.
 - 국회법 제84조에서는 세율과 세목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한 세 입예산 심의를 금지하고 있음. 즉, 법률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 심의를 못하게 하는 경우를 세율과 세목 관련으로 한정하고 있음.

13. 예산의 법률적 효력

국가건전재정법안 (제4조)

- ①국회가 심의ㆍ확정한 예산총칙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②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각 회계연도예산의 입법과목별 예산세칙은 법률로서 승인되어야 한다.

<검토의견>

□ 예산총칙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예산세칙이 법률로서 승인될 경우,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된 후 이 조항의 포함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 □ 만일 그러한 실익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률의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신축성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 재정개혁의 일반적 방향은 재정운용의 신축성은 제고하되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함.

14. 예비비

국가재정법안 (제21조)	국가건전재정법안 (제25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 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예산총칙 등에 의하여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③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검토의견>

- □ 국가건전재정법안에서 예비비 규모를 예산총액의 100분의 1로 한정한 것은 지나치게 경직적일 수 있음. 적정 예비비 규모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 국가건전재정법안 25조 2, 3항의 추가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15. 세입세출예산의 구분에 있어 국회 동의

<검토의견과 대안>

- □ 국가건전재정법안은 제24조 6항에서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예산편성은 행정부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예산구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단,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정부가 제출한 예산 구분 방식으로는 특정 사업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국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역 을 재분류하는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 요할 것으로 봄.

16. 총액계상 예산의 범위

□ 국가건전재정법안 제41조 2항에서는 총액계상예산사업의 총 규모를 예산 순계 기준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검토의견>

□ 예산순계 기준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사전적 한도 설정에 대해서는 그 적 정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17. 예비타당성조사

국가건전재정법안 (제42조)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과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00억원이상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
로 보임.							

- □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국회요구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는 지역적 이해관계에 의한 사업착수 추진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임.
- □ 예비타당성조사는 행정부 내에서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평가로 실시되는 것으로, 국회는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통해 입법부에 의한 별도의 평가체 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중복의 문제가 있으나 서로 다른 입장에서 중첩된 평가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자료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 중첩평가에 의한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음.
- □ 기획예산처장관이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게 명문화하는 것은 양 기관의 성격상 적절치 않음.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는 기본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될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가 예비타당성조사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공 식적 기구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체적 판단 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서 중요한 재정사업에 대 한 사전적·사후적 평가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이는 이미 국회예 산정책처의 법적 기능에 포함된 것임.

18. 재정정보의 공표

<검토의견과 대안>

- □ 양 법안은 공히 재정정보의 공표를 규정하고 있음.
- □ 여기서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강조해야 함.
- -->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발표할 것을 명문화
- -->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공개를 명문화

19. 예산전용의 범위

□ 국가건전재정법안 제51조 2항에서는 '전용이 가능한 세출예산의 누적액은 당해 세항예산사업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

<검토의견>

□ 적정한 사전적 한도 설정을 위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 일반적인 예산개 혁의 방향이 예산운용의 신축성은 확대하되, 그 성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는 방향이라면, 경험적 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채 투입 측면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임.

20. 기본급에 대한 이 · 전용 등의 금지

□ 국가건전재정법 제53조는 '다른 목에서 인건비 중 기본급 목으로 세출예 산을 전용 또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

<검토의견>

□ 인건비 예산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다고 봄.

21. 총사업비 관리

국가건전재정법안 (제56조)

-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을 요하고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인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사업중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거나, 국회가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완성에 3년 이상을 요하고,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2차 연도부터 매년 6월말까지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 ④기획예산처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한 때에는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사업타당성재조 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사업타당성의 평가기준을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검토의견>

- □ 총 사업비 변경의 자율범위를 사전 설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봄. 다만 그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2차 연도부터 6월말까지 매년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것은(제3항) 비현실적이고 비용-효과적이지 못함. 재조사의 일정한 요건을 정해야 할 것임.
- □ 국회예산정책처는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분석하여 소 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이를 별도로 명문화하 는 것은 불필요함.
- □ 행정부에서 수행하는 사업타당성의 평가기준이 국회예산정책처장과 협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 그리고 국회예결특위의 동의 사항이라 보기 어려움 (7항).

2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사용

국가재정법안 (제47조 5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외로 사용할 수 있다.

<검토의견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기술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과학기

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상태임. 그 요지는 현행 기술료 운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려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기술료의 징수와 용도는 개별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러한 지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3. 결산의 국회 제출

국가재정법안 (제53조)	국가건전재정법안 (제64조)
	정부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과 성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 □ 결산과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봄.
- □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회가 결산심의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의 입장에서 결산 제출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준비를 위해서 적절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함.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무적 검토를 통해 제출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임.

Ⅳ. 요약 및 결론

□ 지금까지의 논의 중 핵심적 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통합재정과 국가채무의 범위

- □ 통합재정과 국가채무의 정의를 국가건전재정법안에서와 같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동 법안상의 통합재정과 국가채무의 정의와 범위 설정은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국가채무의 범위에는 공기업 부문이 거의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의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면서 자산은 제외하고 수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채무만을 파악하여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이용한다는 것 은 잘못된 것임.
- □ 우발채무와 국가관리대상채무 정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과제는 국가채 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급 구조 개혁이고, 이는 어떠한 정책과제보다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절대적 과제임.

2. 세계잉여금의 처리

- □ 두 법안은 모두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국가건전재정법안에서는 국가채무 상환에 60% 를 먼저 사용하게 하는 등 보다 강한 제약을 가하고 있음.
- □ 이러한 제약은 국가채무 수준을 낮추는 매우 강한 수단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취지는 이해되나, 재정의 신축성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봄. 경기침체나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크게 제약하게 될 것임.

□ 사전적 제약조건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추경 내역에 대한 엄정한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 확대를 막고 보다 많은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사료됨.

3. 국채의 발행 규모

- □ 국채의 발행규모를 세입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전년도 GDP의 1%를 합한 금액으로 한 국가재정법안 제17조2항은, 신축적 예산 운용을 위한 단서조항의 의미는 인정되나, 그 한도를 GDP의 1%로 정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한도를 축소 조정(예컨대 0.5%)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는 헌법 제58조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특별회계의 요건

- □ 특별회계 요건을 현재와 같이 정의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지금까지 특별회계가 난립되어 온 원인이 되어왔음. 이 조항대로 하면 거의모든 사업을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이 됨.
- □ 따라서 특별회계의 요건을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로 규정

5. 기금의 요건

□ 기금의 법적 정의로서, 특정한 자금과 지출의 연계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특정한 사업에 연계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

□ 기금을 법적으로도 사업기금과 연금기금(4개 기금)으로 구분해서 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회계,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 □ 국가재정법안의 13조 1항 조항은 연금성·보험성 기금을 제외하고 회계 기금간의 여유자금 활용을 명문화하여 칸막이식 운용에 따른 폐해를 줄 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 □ 그러나 이 조항은 동법안의 제69조와 모순되며, 각 기금의 주체는 여유자 금의 통합관리보다는 수익률 제고를 위한 통합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임.
- □ 기본적으로 사업성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기금 투자풀 제도'는 의미가 없으며, 이들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이전에 국가건전재정법안의 제16조와 같은 규정으로 부담금의 감소를 위한 조치가 우선되어야 함.

7.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국가재정법안 (제61조)	국가건전재정법안 (제73조)
<주요항목지출금액의 자율 변경 범위> - 금융성기금 이외: 3/10 - 금융성기금: 5/10 (경상비는 3/10) - 여유자금 포함 -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자율 변경 범위> - 금융성기금 이외: 10/100 - 금융성기금: 15/100 (경상비는 5/100) - 여유자금 불포함 -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

□ 양 법안에서는 모두 기금의 신축적 운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실제로 현 재정체계에서 기금이 특별회계와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는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에 있어서의 자율성 부여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기금의 자율적 지출 변경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적정 범위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적정 범 위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없이 그 정도를 급격히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향후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번 법 제정에서는 현행 변경범위를 '다소'축소 조정하는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임.
8.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재정계획
□ 국가재정법안에서는 3년 이상, 국가건전재정법안에서는 5년 이상으로 규 정
> 중기적 시계의 재정운용계획은 3년 이상이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국가건전재정법안에서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180일전까지로 규정
> 중기적 계획은 최소한 예산안 제출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예산안 제출 이전까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예산안 제출 90일전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실한 계획의 작성을 초래할 수 있음.
9.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 양 법안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나, 국가건전재정법안에서 결산과 성과보고 서 제출을 연계한 것은 의미가 있음(제10조 3, 4항). 결산 또한 성과에 대 한 평가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함.
□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사업별'로 작성되는 것을 명시하고, 이의 공 개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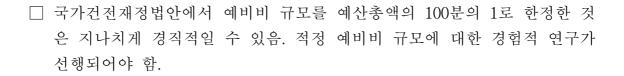
10. 예산안의 편성

- □ 국가건전재정법안 제33, 34조: 예산편성지침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필요하나,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동의 과정이 지연될 경우 예산편성 과정 자체가 표류할 수 있음.
 - 국가건전재정법안 제69조 2항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한 국회 동의 문제도 동일한 문제를 가짐.
- □ 동법안 제35조 1항: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행정부의 예산편 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예산심의에 필요할 경우 국회가 부처에 예산 요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임.
- □ 동법안 제36조: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안 편성과 제출은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사업의 착수시기에 1년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단, 법률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예산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장치가 작동되어야 할 것임.

11. 예산의 법률적 효력

- □ 국가건전재정법안 제4조: 예산총칙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예산세 칙이 법률로서 승인될 경우,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이 무 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된 후 이 조항의 포함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 □ 만일 그러한 실익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률의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신축성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12. 예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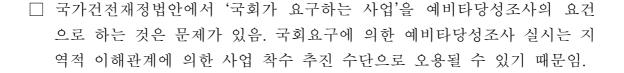
□ 국가건전재정법안 25조 2, 3항(예비비 사용목적 지정 금지, 인건비의 경우 국회승인)의 추가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13. 세입세출예산의 구분에 있어 국회 동의

국가건전재정법안은 제24조 6항에서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각	경
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기획예산처장관이	정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예산편성은 행정부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예산구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14. 예비타당성조사



- □ 예비타당성조사는 행정부 내에서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평가로 실시되는 것으로, 국회는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통해 입법부에 의한 별도의 평가체 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중복의 문제가 있으나 서로 다른 입장에서 중첩된 평가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자료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 중첩평가에 의한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음.

15. 재정정보의 공표

- □ 양 법안은 공히 재정정보의 공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추가로 다음을 강조
- -->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발표할 것을 명문화
- -->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공개를 명문화

16. 기본급에 대한 이 · 전용 등의 금지

- □ 국가건전재정법 제53조는 '다른 목에서 인건비 중 기본급 목으로 세출예 산을 전용 또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
- □ 인건비 예산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다고 봄.

17. 결산의 국회 제출

- □ 결산과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봄(국가건전재정법 안 64조).
- □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회가 결산심의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의 입장에서 결산 제출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준비를 위해서 적절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함.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무적 검토를 통해 제출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임.

<결어>

□ 지금까지 국가재정의 기본 법 체계 설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이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기본 틀의 역할을 할 법안이 여야 합의로 하루 속히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함.

첨부자료

1. 국가재정법안

2. 국가건전재정법안

국 가 재 정 법 안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 및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제4조(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 제6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중장기 재정전망, 중장기 재정운용의 목표 및 전략, 분야 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 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 ④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 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⑦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⑧중앙관서의 장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기획예 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률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 이하 "기금 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관리주체에게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 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 액,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 회 이상 정보통신매체, 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 ②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부처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중앙관서의 장의 직무위임) 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 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②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그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 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업무의 관장) ①예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결산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제13조(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 1. 국민연금기금
 - 2. 공무원연금기금
 -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4. 군인연금기금
 - 5. 고용보험기금
 - 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7. 임금채권보장기금
 - 8.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9.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 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

- 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에 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미리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 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있다.
 -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 치된 경우
 -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장 예 산

제1절 총 칙

- 제16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②제47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17조(국가의 세출재원) ①국가의 세출은 조세수입과 국채, 차입금(외국정부, 국제 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 포함한 세외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의 발행 또는 차입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정부가 추계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국채의 발행 또는 차입의 규모를 세입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전년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1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제18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 담행위를 총칭한다.
- 제19조(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 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1.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이 경우 중앙관 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20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②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다.
 -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하다.
- 제2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22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 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 은 총액의 범위안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 이에 충당할 수 있도록 국채 또는 차입금 한도액을 실제 세입예산에 계상된 규모보다 초과 책정하여 국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명시이월비) ①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감사원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절 예산안의 편성

- 제25조(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예산안편성지침 통보)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제27조(예산요구서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 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28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 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9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
 - 2.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 3.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 4.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 5.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 6.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 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 7.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 8.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 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 9.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삭감이유와 그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
 - 10. 국채와 차입금의 상환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실적,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그 상환연차표에 관한 명세서
 - 11.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 제31조(국회제출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32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제31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제30조 각호에 규정된 첨부서 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3조(총액계상)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계상사업의 총규모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계상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전에 예산배분에 관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세부집행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4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그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절차, 조사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5조(대규모개발사업예산의 단계별 편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 제36조(독립기관의 예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조에서 "독립기관"이라 한다)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제37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의 통보)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통보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 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등 관련절차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예산의 집행

- 제38조(예산 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운영계 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 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9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0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1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 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42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또는 각 장·관·항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 ③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예산을 이용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의 승인을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43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명시이월비
 - 2.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

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4.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③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⑤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⑥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이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우선적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 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4조(예산성과금 지급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예산성과 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총사업비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을 요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6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

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 아 이를 세입으로 하여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7조(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 비"라 한다)에 있어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 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한 범위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외로 사용할 수 있다.
 -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장 결 산

제49조(결산의 원칙) 결산은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 보고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국회법 제23조제3항, 법원조직법 제82조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11조제2항, 선 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금제도가 있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 가. 세입예산액
- 나. 이체 등 증감액
- 다. 세입예산현액
- 라. 징수결정액
- 마. 수납액
- 바. 미납결손액
- 사. 미수납액

2. 세출

- 가. 세출예산액
- 나. 전년도이월액
- 다. 예비비사용액
- 라. 전용 등 증감액
- 마.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 바. 세출예산현액
- 사. 지출액
- 아. 다음 연도 이월액
- 자. 불용액
-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등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51조(결산의 작성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의 서류를 포함한 결산을 제50조제3항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2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46조제5항의 예비비사용명세서에 따른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 2. 제50조제1항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따른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 3. 제50조제2항의 예비금사용명세서에 따른 예비금사용총괄명세서

- ②결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제50조제1항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 2. 계속비결산보고서
- 3. 국고채무부담행위명세서
- 제52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을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53조(결산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 금

- 제54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②기금의 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하다.
- 제55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②기금관리주체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57조 내지 제64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다.
- 제5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매년 4월 30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 ④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한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⑥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 제58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 ④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정부는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 된 국채발행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총칙에 규정하 여야 한다.
 -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0조(증액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6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가 기금운용계획중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1. 별표 3의 금융성기금외의 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3 이하
 - 2. 별표 3의 금융성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3 이하로 한다.
 -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 지출금액
 - 4. 국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국채 발행한도 범위안 에서의 지출금액

- ③기금관리주체는 주요항목지출금액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항 목지출금액을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1.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 2.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 ④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⑤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5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2조(기금운용계획안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지침
 - 2. 기금조성계획
 - 3.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 4.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 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 5.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 제63조(지출사업의 이월)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 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5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4조(기금의 결산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으로서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보고서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장을 거쳐야 한다.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기금결산을 작성

- 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에 기금관리주체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연도 4월 20일까지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결산을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 4. 재원조성실적표
- 5. 사업성과평가서
-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 7. 그 밖에 기금결산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65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2.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 3.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 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여 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호의 심의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 제66조(기금정책심의회) ①기금관련 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 기금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다음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2.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 4.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 5. 기금의 신설 ·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위원장이 정책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정책심의회는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
- 1. 기획예산처장관
- 2. 기금의 소관중앙관서의 차관·차장 또는 1급공무원
-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민간 위원
- ④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 ⑤제3항제3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7조(기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 여 평가하되,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기금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를 하거나 기금제도에 관한 전 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8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제69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0조(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의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 제71조(준용규정) 예산에 관한 제27조제3항,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

44조, 제45조 및 제48조는 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재정건전화

- 제72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국회의원(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년간의 회계 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4조(국세감면의 제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감면금액, 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하다.
- 제75조(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정부는 예산 성립 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
 - 1.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2.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 4.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제76조(세계잉여금의 처리) ①매 회계연도 세입금액에서 세출금액(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다음 채무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 2.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상금
-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의 상환
- ②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잉여금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세계잉여금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잉여금을 사용하고자하는 때에는 사용 규모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7조(국가채무의 관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 2. 당해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 3. 다음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계 획
 - 4.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 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

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8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 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 제79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 ②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보관하게 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위탁관리하게 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4조의 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0조(장부의 기록과 비치)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 및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81조(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 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 ④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제83조(재정집행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그 밖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기 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재정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집행애로요인의 해소 등 필요한 조치 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4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유효한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여부와 집행 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85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 처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점검하게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 련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86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및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에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집행에 책임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그 시정을요구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7조(재정관련 공무원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3조(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계획 등부터 적용한다.
- 제4조(중기사업계획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2006년도분 예산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 제5조(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도분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부터 적용한다.
- 제6조(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50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2004 년도분 결산부터 적용한다.
- 제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7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의 또는 제출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監査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9호중 "基金管理基本法 第2條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 ②雇傭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7조제2항중 "基金管理基本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公共資金管理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4중 "예산회계법 제110조"를 "국가재정법 제78조"로 한다.

제9조제1항중 "基金管理基本法 第5條"를 "국가재정법 제57조"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基金管理基本法 第8條第2項"을 "국가재정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④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⑤공적자금상환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예산회계법 제47조"를 "국가재정법 제7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7조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1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64조"로 한다.

제16조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⑥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⑦課稅資料의제출및관리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豫算會計法 第14條"를 "국가재정법 제10조"로 한다.

⑧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6조"로 한다.

⑨交通體系效率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豫算會計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中·長期 財政運用計劃"을 "국가 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⑩국가균형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6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1조"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⑪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豫算會計法 第14條"를 "국가재정법 제10조"로 한다.

迎국가인권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10조"로 한다.

⑬國家情報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豫算會計法 第29條"를 "국가재정법 제36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豫算會計法 第31條"를 "국가재정법 제30조"로 한다.

[4]국고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항제2 호 본문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41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39조"로 한다.

⑤國立醫療院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豫算會計法 第38條"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豫算會計法 第37條"를 "국가재정법 제41조"로 한다.

16國有財産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豫算會計法 第14條"를 "국가재정법 제10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제1호중 "豫算會計法 第7條"를 각각 "국가재 정법 제5조"로 한다.

①國債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豫算會計法 第9條"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조제2호중 "豫算會計法 第7條"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18國會圖書館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⑩國會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豫算會計法 第29條"를 "국가재정법 제36조"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1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64조"로 한다.

20國會事務處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중"豫算會計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②企業豫算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회계법"을 각각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豫算會計法 第35條第1項"을 "국가재정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②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중 "基金管理基本法 第5條"를 "국가재정법 제57조"로 한다.

②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基金管理基本法 第7條第1項 및 第9條"를 "국가재정법 제57조 및 제64조"로 한다.

⑤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豫算會計法 第38條"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豫算會計法 第38條"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②文化財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중 "豫算會計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②物品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豫算會計法 第14條"를 "국가재정법 제10조"로 한다.

②放送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중"豫算會計法 第14條"를 "국가재정법 제10조"로 한다.

⑩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加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豫算會計法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을 "국가재정법 제10조"로 한다.

제39조중"豫算會計法 第15條 및 第117條"를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85조"로 한다.

➂복권및복권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을 "동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③肥料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豫算會計法 第47條第2項"을 "국가재정법 제76조제3항"으로 한다.

劉産業發展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중 "基金管理基本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등還給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중"豫算會計法 第18條"를 "국가재정법 제16조"로 한다.

36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糧穀證券整理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중 "基金管理基本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豫算會計法 第38條"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豫算會計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⑩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豫算會計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④外國換去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豫算會計法 第7條"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豫算會計法 第47條第2項"을 "국가재정법 제76조제3항"으로 한다.

②郵政事業運營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豫算會計法 第25條第2項"을 "국가재정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豫算會計法 第36條·第37條"를 "국가재정법 제41조·제42조"로 한다.

⑤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57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65조"로 한다.

④財政融資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豫算會計法 第36條"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⑤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6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를 "국가재정법 제67조"로 한다.

47)租稅特例制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48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7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⑩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豫算會計法 第14條第1項"을 "국가재정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⑩地方財政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豫算會計法 第25條第3項"을 "국가재정법 제27조제1항"으로, "同法 第39條第2項"을 "동법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⑤]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豫算會計法 第25條第2項"을 "국가재정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중"豫算會計法 第36條 및 第37條"를 "국가재정법 제41조 및 제42 조"로 한다. ②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豫算會計法 第38條"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⑤3특허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函韓國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중"豫算會計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⑤環境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豫算會計法 第38條"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協同硏究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基金管理基本法 第2條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하고, 동조제 3항중 "基金管理基本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መ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또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특별회계설치근거법률(제4조제3항관련)

-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2. 교도작업특별회계법
- 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4.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 5.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 6. 군인연금특별회계법
- 7. 기업예산회계법
- 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9.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 10. 등기특별회계법
- 1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1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13.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 14. 재정융자특별회계법
- 15.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 16.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 17.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 18. 특허관리특별회계법
- 19. 환경개선특별회계법

[별표 2]

기금설치근거법률(제5조제1항관련)

- 1. 고용보험법
-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3. 공무원연금법
- 4. 공적자금상화기금법
- 5. 과학기술기본법
-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7. 국민건강증진법
- 8. 국민연금법
- 9. 국민체육진흥법
- 10. 군인복지기금법
- 11. 군인연금특별회계법
- 12. 근로자복지기본법
- 13.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1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1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17. 남북협력기금법
- 1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1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2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 2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 2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2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2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25. 문화예술진흥법
- 26. 방송법
- 27.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 28. 보훈기금법
- 29. 복권및복권기금법
- 3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3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33. 수출보험법
- 34. 신용보증기금법
- 35.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 36. 양곡증권정리기금법
- 37.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 38. 여성발전기본법
- 39.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40. 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한한다)
- 41.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 42. 외국화거래법
- 43. 원자력법
- 44.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45. 임금채권보장법
- 46.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 4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48. 전기사업법
- 49. 정보화촉진기본법
- 50. 주택법
- 5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52.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 53. 청소년기본법
- 54. 축산법
- 55.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5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5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5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별표 3]

금융성기금(제61조제2항관련)

-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6.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기금
-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8.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국가건전재정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재정"이라 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외 수입과 지출활동 및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예산안에 포함되는 그 밖의 경제적 활동의 합계를 말한다.
- 2. "통합재정"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준정부공공기관의 순수한 기업활 동 이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 3. "준정부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준정부공공기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금·출연금·보조금 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받는 기관 또는 단체
 - 나. 법령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
- 4. "세입"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 5. "세출"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 6. "예산"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국가의 수입·지출의 예정액 또는 계획안을 말하다.
- 7. "중기재정계획"이라 함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5회계년도 이상의 재정운용계획을 말한다.
- 8. "조세지출예산서"이라 함은 조세감면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의한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 · 세목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9. "성과"라 함은 재정활동의 결과가 목표에 기여한 정도를 말한다.
- 10. "세계잉여금"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 세입금액에서 세출금액(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로 이월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11.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 원을 말한다.
- 12.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 기관의 장(검찰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13. "기금관리주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 14. "기금평가기관"이라 함은 자산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회계감사실적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 15. "국가채무"라 함은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채무를 말한다.
- 16. "국가관리대상채무"라 함은 국가채무에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우발 채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17. "우발채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정의된 우발상황에 따른 채무를 말한다. 제3조(예산원칙) 정부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 4. 정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예산과정은 공개하여야 한다.
 - 5. 정부는 예산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6. 정부는 재정전망, 재정건전성 판단, 재정정책 수립 및 재정통계의 작성에 있어서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한다.
- 제4조(예산의 법률적 효력과 예산지출법) ①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총칙은 법률 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②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각 회계연도예산의 입법과목별 예산세칙은 법률로서 승인되어야 한다.
- 제5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 및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제6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 기 위하여 설치한다.
 -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한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제8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한 법률에 의하지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 제9조(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중기재정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 2. 기능별·분야별 재원배분계획
 - 3. 재정규모증가율
 - 4.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지표에 대한 전망과 관리계획
 - 6. 국가채권관리계획
 - 7. 국가채무관리계획
 - 8.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관리계획
 - 9. 세입세출예산 외로 이루어지는 중앙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 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 하여 협의할 수 있다.
 -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⑦중앙관서의 장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기획예 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⑧기획예산처장관은 중기재정계획의 집행실적을 중기재정계획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연도에 재정백서로 발간하여 공표하고, 공표 직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⑨이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재정백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의 성과계획서도 함께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도 함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감사원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전년도 예산의 성과검사보고서도 함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⑧기획예산처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행함에 있어서 평가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관 하여는 매년 백서를 발간•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채무백서에는 국가관리 대상채무의 변동상황을 포함하여야 하고, 재정수지백서에는 통합재정수지를 포함 하여야 한다.
 - ②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부처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매 회계연 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와 광역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중앙관서의 장의 직무위임) ①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중앙관서의장으로 본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 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업무의 관장) ①예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결산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자 하는 때에는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제16조(기금의 여유재원)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함에 있어 과도한 여유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구조적인 요인을 지닌 연금성 기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당해 기금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담금 등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제17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고,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그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미리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③국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

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있다.
-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 치된 경우
-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정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
 - 2. 감사원의 회계와 결산검사
 - 3. 국고금의 관리
 - 4. 국가채권의 관리
 - 5. 국가채무의 관리
 - 6. 국유재산의 관리
 - 7. 물품의 관리
 - 8. 발생주의 회계
 - 9. 부담금의 관리
 - 1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 11.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의 계리
 - 1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
 - 13. 정부투자기관의 관리
 - 1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
 - 15.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 16. 그 밖에 재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 ②각 특별회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예산

제1절 총 칙

제20조(예산총계주의) 세입과 세출, 현물출자, 전대차관, 국채, 국유재산 및 특정목

적출연금의 집행잔액 · 이자 · 기술료 등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조세수입, 국유재산매각수입 및 기타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발행수입 또는 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제22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

- 1. 예산총칙
- 2. 세입세출예산
- 3. 계속비
- 4. 명시이월비
- 5. 국고채무부담행위
- 6. 입법과목별 예산세칙
- 제23조(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 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1.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채발행수입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이 경우 중앙 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또는 차입금 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 3. 현물출자, 전대차관
 - 4.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
- 제24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②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단위별로 구분한 후 당해 조직단위내에서 일반 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한다.
 - ④세출예산 및 국고부담행위는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장은 기능별로, 관은 기능의 세부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항은 주요사업별로, 세항은 사업의 세부분류에 따라 구분하며, 목은 각 경비의 성질에 따라 구분하다.
 -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세출예산을 요구함에 있어 2개 이상의 항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를 하나의 항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은 이를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 의 구분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 제25조(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

상할 수 있다.

-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예산총칙 등에 의하여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 ③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6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 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 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7조(명시이월비) ①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감사원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8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경우 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 ③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 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29조(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감사) 감사원은 각 회계연도의 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조(입법과목별 예산세칙) ①입법과목별 예산세칙(이하 "예산세칙"이라 한다)에는 입법과목별 목적, 용도, 사업내용, 사용에 대한 제약조건, 권한과 책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1항의 예산세칙을 따라야 한다.
 - ③예산세칙의 작성, 승인절차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31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예

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절 예산안의 편성

- 제32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국회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정부는 매 회계연도 4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예산안편성지침 통보)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라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한 경우이를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 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 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36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안은 편성하여 제출할 수 없다.
- 제37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 2.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 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 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 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 8. 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삭감이유와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
- 9. 주요사업별 성과계획서
- 10. 신규사업계획서
- 11. 준정부공공기관의 예산서
- 12. 조세지출예산서
- 13. 국가채권•채무현황표
- 14.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채무관리계획
- 15. 특별회계의 정비계획
- 16.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거나 연 5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사업의 전년도 집행실적과 당해 연도의 집행상황, 예산액에 대한 설명서 및 총사업비 변경내역
- 17. 전년대비 세출예산의 조직별 사업별 목별 예산액 및 증감사유 설명서
- 18. 각 부처 경영진단서와 구조조정계획서
- 19.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 제39조(국회제출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40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제39조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1조(총액계상)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계상예산사업의 총규모는 매 회계연도 예산순계 기준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계상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전에 예산배분에 관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세부집행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 총액계상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선정기준과 사업계획 타당성검토서를 예산배정 또는 집행계획 수립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예산집행 및 실적평가 보고서를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감사원은 총액계상예산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2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과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국회예산정책처장에 게 제출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절차, 조사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3조(대규모개발사업예산의 단계별 편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요구할 수 있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 제44조(독립기관의 예산) 독립기관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제45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의 통보)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 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등 관련절차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46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금의 사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사용명세서 및 총괄표 를 감사원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예산의 집행

제47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 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8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 제49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0조(예산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제51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사업간의 유사성, 재해대책 등을 위한 시급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의 충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이 가능한 세출예산의 누적액은 당해 세항사업예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 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 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금액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52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또는 각 장·관·항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 ③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

위 안에서 예산을 이용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53조(기본급에 대한 전용·이용 등의 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목에서 인 건비중 기본급 목으로 세출예산을 전용 또는 이용할 수 없다.
- 제54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명시이월비
 - 2.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다만, 재이월은 금지한다.
 -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4.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③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⑤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⑥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이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우선적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 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5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예산성과 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총사업비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을 요하고 총사업비

- 가 500억원이상인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 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사업비의 100분 의 2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사업중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거나, 국회가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완성에 3년 이상을 요하고,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2차 연도부터 매년 6월말까지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 ④기획예산처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한 때에는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사업타당성재조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된 때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배정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사업타당성의 평가기준을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 제57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이를 세입으로 하여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8조(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

- 비"라 한다)에 있어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 ②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 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 ③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초과지출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장 결 산

- 제60조(결산의 원칙) ①결산은 정부회계기준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도 록 하여야 한다.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결산을 통해 생산되는 재정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재정통계지침을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1조(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고채무부담행위명세서, 성과보고서 및 전년도 결산 당시 국회 및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결과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국회법 제23조제3항, 법원조직법 제82조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11조제2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금제도가 있는 중앙관서의 장 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재정경 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 가. 세입예산액
- 나. 이체 등 증감액
- 다. 세입예산현액
- 라. 징수결정액
- 마. 수납액
- 바. 미납결손액
- 사. 미수납액
- 2. 세출
 - 가. 세출예산액
 - 나. 전년도이월액
 - 다. 예비비사용액
 - 라. 전용 등 증감액
 - 마.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 바. 세출예산현액
 - 사. 지출액
 - 아. 다음 연도 이월액
 - 자. 불용액
-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62조(결산의 작성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의 서류를 포함한 결산을 제61조제3항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57조제4항의 예비비사용명세서에 따른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 2. 제61조제1항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따른 세입 세출결산보고서
 - 3. 제61조제2항의 예비금사용명세서에 따른 예비금사용총괄명세서
 - ②결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 2. 계속비결산보고서
 - 3. 국고채무부담행위명세서
 - 4. 주요사업별 성과보고서
 - 5. 통합재정수지보고서
 - 6. 국가채무관리계획대비 실적보고서
 - 7. 국가채권관리계획대비 실적보고서
 - 8.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거나 연 5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사업의 지출명 세표

- 9. 국가채무계산서
- 10. 국가채권현재액 보고서
- 11. 명시이월비 집행실적보고서
- 12. 사고이월명세서
- 13.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 14. 총액계상예산사업의 세부사업별 집행실적보고서
- 15. 준정부공공기관의 결산보고서
- 16.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총계산서
- 17. 물품증감과 현재액총계산서
- 18. 융자사업의 결산 및 융자사업자의 융자금집행실적보고서
- 19. 특정과제 수행목적 출연사업의 결산 및 출연사업자의 출연금집행실적보고서
- 20. 현물출자 집행실적보고서
- 21. 추정세계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
- 22. 부담금 운용보고서
- 23.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의 지역별·사업별 교부실적보고서
- 24.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운용보고서
- 25. 국고여유자금운용실적보고서
- 26. 국유재산법 제4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무상대부현황 총보고서
- 2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 제63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을 검사하고 그 보고서 및 성과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64조(결산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과 성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 금

- 제65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②기금의 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 제66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는 가입할 수 없다.
- 제67조(의결권 행사의 제한) ①기금관리주체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주주총회의 안건이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는 자산운용지침에 포함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제6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다.
- 제69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국회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매년 4월 30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 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 ④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 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 와 협의하여 조정한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 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⑥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 제70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하며, 장·관·항·세항·항의 구분은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정부는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

- 된 국채발행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2조(증액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3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가 기금운용계획중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1. 별표 3의 금융성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 2. 별표 3의 금융성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0분의 15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이하로 한다.
 -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 지출금액
 - 4. 국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국채 발행한도 범위 안에서의 지출금액
 - ③기금관리주체는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을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있다.
 - ④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⑤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9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4조(기금운용계획안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

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1. 기금조성계획
- 2. 기금정비계획
- 3.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 4.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 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 5.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 제75조(지출사업의 이월)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 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9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6조(기금의 결산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으로서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보고서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9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기금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에 기금관리주체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연도 4월 20일까지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결산을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 4. 재원조성실적표
 - 5. 사업성과평가서
 -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 7. 그 밖에 기금결산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

류

-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77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2.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 3.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 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으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을 2분의 1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여 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호의 심의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 제78조(기금정책심의회) ①기금관련 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 하에 기금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다음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2.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 4.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 5. 기금의 신설 ·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위원장이 정책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정책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기획예산처장관
 - 2. 기금의 소관중앙관서의 차관·차장 또는 1급공무원
 -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 ④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 ⑤제3항제3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9조(자산운용위원회) ①전전 회계연도의 여유자금규모가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기금의 경우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 ②다음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자산운용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2.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 3.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4. 자산운용 전담 부서의 장의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③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임직원중에서 선임하고,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의 3분의 2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 금 및 공무원연금기금은 해당 법률이 정한 운영위원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3분의 1을 위촉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5년 이상 자산운용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2. 국제재무분석사(CFA), 국제금융위험관리사(FRM) 등 투자에 관한 전문가로 인 정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3. 국내 상장기업, 기업예산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업 및 정부투자기 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재정을 담당하는 이사의 직 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4.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5.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④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0조(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①국민연금기금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회사의 조직·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다.
- 제81조(자산운용지침 작성 및 보고) ①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기금의 경

- 우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고, 금융감독위원 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투자결정 및 예상위험산정 등 위험관리와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2. 최대 위험한도내에서의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 3. 투자대상 자산별 기대수익률에 관한 사항
- 4.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5.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예외적 행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2조(자산운용 전담부서) ①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자산운용을 전담할 부서를 두어야 한다.
 -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한 자산운용 위원 중에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 ③부서의 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규범의 준수 및 자산운 용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83조(자산운용의 감시) ①전전회계연도의 여유자금규모가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동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상황에 대하여 연 1회 기금 평가기관의 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4조(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규범)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을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5조(기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 여 평가하되,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기금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를 하거나 기금제도에 관한 전 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제87조(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의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 제88조(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책임)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 실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규범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 으로써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89조(준용규정) 예산에 관한 제35제3항·제39조·제42조·제43조·제45조·제55조·제56조 및 제59조는 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재정건전화

- 제90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국회와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정부는 국가채무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재정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91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 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 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법 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2조(국세감면의 제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감면금액, 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제93조(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
 -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2.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경비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당해 연도 예산심의 당시 국회에서 삭감한 재원을 추가경정예산 안에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당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4조(세계잉여금의 처리) ①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 ②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2.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상금의 지급
 - 3.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상환
 -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의 상환
 - ③세계잉여금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잉여금의 사용은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잉여금의 사용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제출한 결산이 국회의 승인을 받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 ⑥세계잉여금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잉여금을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용규모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5조(국가채무의 관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관리대상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동 계획 대비 실적을 결산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 2. 당해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 3. 다음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계 획
 - 4.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관리대상채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6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 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 제97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 ②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보관하게 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위탁관리하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한국은행등은 유가증권의 보관·취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수 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 2. 한국은행등은 유가증권의 수급 등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 청과 감사원장에게 제출하되, 감사원장에게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 를 붙여야 한다.
 - 3. 한국은행등은 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4. 한국은행등이 유가증권의 보관·취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국은행등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 제98조(장부의 기록과 비치)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 및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9조(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 제100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 ②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 ③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제101조(재정집행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그 밖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재정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집행애로요인의 해소 등 필요한 조치 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2조(내부통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유효한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3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 처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점검하게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 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104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및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에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집행에 책임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그 시정을요구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5조(재정관련 공무원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6(준정부공공기관선정위원회) ①통합재정에 포함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준정부공공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회에 준정부공공기관선정위원회를 둔다. ②그 밖에 준정부공공기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07조(납세자소송) ①국민은 국가 등의 국가재정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의 예방, 회복을 위한 소 송(이하 "납세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 ②이 법에 정한 외에 납세자소송의 목적 ·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장 벌 칙

- 제108조(공무원의 책임 및 처벌) 추가경정예산의 선집행·사전배정, 고의적인 예산의 중복·은닉편성, 불법적인 예산의 이·전용, 이체, 이월집행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9조(기금자산운용에 부당개입한 공무원에 대한 벌칙 등) ①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3조(중기재정계획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 등부터 적용한다.
- 제4조(중기사업계획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32조의 규정은 2007년도분 예산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 제5조(총액계상사업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2007년 도분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부터 적용한다.
- 제6조(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은 2005 년도분 결산부터 적용한다.
- 제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7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또는 기금 관리기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 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 다.

[별표 1]

특별회계설치근거법률(제7조제3항관련)

-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2. 교도작업특별회계법
- 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4.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 5.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 6. 군인연금특별회계법
- 7. 기업예산회계법
- 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9.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 10. 등기특별회계법
- 1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1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13.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 14. 재정융자특별회계법
- 15.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 16.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 17.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 18. 특허관리특별회계법
- 19. 환경개선특별회계법

[별표 2]

기금설치근거법률(제8조제1항관련)

- 1. 고용보험법
-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3. 공무워연금법
-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5. 과학기술기본법
-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7. 국민건강증진법
- 8. 국민연금법
- 9. 국민체육진흥법
- 10. 군인복지기금법
- 11. 군인연금특별회계법
- 12. 근로자복지기본법
- 13.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1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1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17. 남북협력기금법
- 1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1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2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 2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 2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2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2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25. 문화예술진흥법
- 26. 방송법
- 27.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 28. 보훈기금법
- 29. 복권및복권기금법
- 3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3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33. 수출보험법
- 34. 신용보증기금법
- 35.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 36. 양곡증권정리기금법
- 37.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 38. 여성발전기본법
- 39. 영산강 ·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40. 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한한다)
- 41.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 42. 외국화거래법
- 43. 원자력법
- 44.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45. 임금채권보장법
- 46.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 4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48. 전기사업법
- 49. 정보화촉진기본법
- 50. 주택법
- 5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52.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 53. 청소년기본법
- 54. 축산법
- 55.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5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5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5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별표 3]

금융성기금(제72조제2항관련)

-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6.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기금
-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8.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